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촌민박사업 등록제도 신설 등〉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3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법률 분법·이관 필요성	5
2. 농어촌민박 규제완화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9
IV. 개별 조문별 검토의견	11
1.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용어 정의 신설	11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16
3. 농어촌민박사업자 결격사유 신설	49
4. 같은 사업장에서의 등록 금지	65
5.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70
6. 「식품위생법」의제 규정 마련	90
7. 농어촌민박사업표시제한 및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규정 이관	95
8. 보험가입 의무 신설	97
9. 농어촌민박사업의 승계 규정 마련	100

10.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104
11.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105
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24
13. 빈집재생민박사업 운영 근거 마련	130
14. 민박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거 마련	142
15.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 결정 관련 지원 근거 마련	147
16. 출입·검사 등에 대한 근거 마련	151
17. 청문 및 수수료	155
18. 벌칙	159
19. 양벌규정	164
20. 과태료	166
21. 부 칙	17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15.

3. 회 부 일 : 2024.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업은 제도 도입 목적인 농어가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4도(都)3촌(村)’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힐링·위케이션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의 추구로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각광을 받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은 과소화·고령화의 가속화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 퇴색의 상징인 빈집이 지역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자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관광숙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의 활용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26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난 7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규모 기준 완화, 식사 전면 허용, 사업자 지위 승계 보장 등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불법영업에는 엄정 조치하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편, 농어촌민박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은 '95년 시행 이후 규제 완화와 관리체계 강화 등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듭하였으나, 현행 정비법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육성은 물론 불법·편법 영업의 증가 등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 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함)을 거주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과 단기영업 제한, 보험 가입 의무, 상속 지위승계 허용, 등록 수수료 부과, 출입·검사 거부·방해·회피 금지 등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3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 신설).

라.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단체일 경우 자본금을 제한하고,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1인 이상 두도록 하며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형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4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박의 밀집규모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해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5 및 제11조의16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해제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법률 분법·이관 필요성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율하는 다수의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법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두 개의 법률에서 나뉘어 규율되고 있음.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현행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도농교류법」)에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민박사업에 관련 규정 현황】

구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정의	제2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1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6조의2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제86조의3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86조의4	
지도·감독 등	제88조	
사업장 폐쇄 등	제89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0조	
청문	제118조	
벌칙	제130조	
과태료	제132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3조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공간의 개발·정비를 위한 절차법적 기능을 가진 법률로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음.

【「농어촌정비법」의 구성체계】

핵심분야	주요내용
공통사항	목적, 정의, 자원 조사, 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기본시행계획 등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원칙, 기본시행계획 등
농어촌산업 육성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시행계획, 농공단지 개발 기본지침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육성 시책, 절차 등
한계농지	정비 기본방침, 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등
마을정비구역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 등

「농어촌정비법」은 1995년 시행(법률 제4823호)된 이래 타법 개정을 포함하여 9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장·제목 변경, 조문 삭제, 가지 조문 추가, 조문 이관·신설 등으로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고 법률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음(제정 당시 107개 조문에서 현행 155개 조문으로 증가).

그런데 하나의 법령에 지나치게 방대한 규정이 있거나, 같은 분야라도 내용이나 성질이 다른 다수의 내용을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하면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 경우 기존 법령을 분법하여 새로운 다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¹⁾.

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분법의 세부기준²⁾으로는 ‘법령 내용의 복잡성 및 이해 곤란성’, ‘법령 체계의 일관성 유지 곤란’, ‘단일법 내용의 세분화 필요성’, ‘유사 법령과의 통합 필요성’,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 ‘특정 분야 중요성(시급성)의 효율적 해결’ 등을 들 수 있음.

【분법의 세부기준】

-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법 이해가 어려운 경우
-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
-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어촌정비법」의 주요규정인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등 농어촌지역 정비와 개발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유지하고,

현행 「농어촌정비법」 전체 조문 155개 중 12개 조문(보칙과 벌칙을 제외하면 9개 조문)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낮으나, 최근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농어촌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여 정비하면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려는 취지로 보임.

2) 최윤철 외(2011),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입법정책학회

한편, 분법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제정법으로 만드는 방안과 기존 유사취지의 법률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도농교류법」의 목적³⁾이 농어촌민박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현행 「도농교류법」에 이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하기 보다 「도농교류법」에 이관하여 분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분법 방안 비교】

구분	「도농교류법」과 통합	별도 법률 제정
장점	▶ 입법 경제성	▶ 입법 효율성 ▶ 규율(목적)의 명료성
쟁점	▶ 양립의 모호성 ▶ 조문 정비 난해	▶ 과잉 입법 우려

3) 「도농교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2. 농어촌민박 규제완화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가의 소득보전 및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확대하기 위하여 '95년 「농어촌정비법」에 도입된 제도로써, 그간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4도(都)3촌(村)4)'의 확산, 힐링·위케이션⁵⁾ 등에 따른 농어촌 생활인구의 증가와 귀촌·농어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농어촌민박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민박 제도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불법·편법 영업이 증가하는 등 관리·감독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변화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한편,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로 인한 빈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농촌빈집을 농어촌민박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강구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면서,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감독

4)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

5) Work(일) + Vacation(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나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일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근무 방식

6) 농어촌 민박때 신고제서 허가제로... 실거주지는 해당민박서 도내로 완화를(서울신문,'24.12.10)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없애자”...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톡톡(한국농어민신문,'24.7.30.)

을 강화하되,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에서 조문별로 검토함.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현행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도농교류법)	비고
규제 완화	사전거주	6개월 이상 *임대는 3년 이상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농촌빈집 한정)	
	자격	농어촌 주민	주민외 허용 (농촌빈집 한정)	
	주택규모	연면적 230㎡ 미만	면적제한 폐지	지자체 위임
	식사제공	조식만 가능	식사 제공(투숙객 한정)	지자체 위임
규제 강화	영업제도	신고	등록(5년 갱신)	결격사유 마련
	사업자책임	-	보험가입 의무화, 조사·점검 회피금지	
	민박표시	온·오프라인 게시	통신판매중개업자 추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IV. 개별 조문별 검토의견

1.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용어 정의 신설

가. 개정조문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용어를 현행법에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u> <u>1의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u> 4. ~ 7. (현행과 같음) <u>7의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하 “빈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u>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이관하면서 필요한 용어를 “준농어촌”, “농어촌주택” 및 “농어촌민박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정의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관하고 있음.

첫째,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를 「농어촌정비법」과 달리 변경하고 있음.

①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주민이 주택에 실거주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실거주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② 빈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아니거나, 주민이 거주 및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숙박·조식”을 “숙식”으로 변경하여 조식 이외의 식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④ “농어촌민박사업”의 목적을 “농어촌 소득 증대”에서 “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확산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변경】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u>소유 및 거주</u> 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u>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u> 투숙객에게 <u>숙박·취사시설·조식</u>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u>거주</u> 하고 있는 주택 또는 「 <u>농어촌정비법</u> 」 제2조제12호에 따른 <u>빈집</u> (이하 “빈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u>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u> 투숙객에게 <u>숙식 및 취사시설</u>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중 ①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②·④는 농어촌민박에 빈집활용을 도모하며 ③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를때 빈집을 이용하는 농어촌민박의 경우에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바, 이를 각 목으로 분리하여 규정⁷⁾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예컨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하 “빈집”이라 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⁸⁾의 개념에는 ‘주택’ 뿐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빈집을 이용한 민박사업의 경우는 주택 뿐 아니라 건축물의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경우도 일반적인 농어촌민박의 경우와 같이 주택에 한정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를 규정할 때 주택을 활용함을 명시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정의를 현행법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농어촌주택”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에서 해당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다양한 조문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약칭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문을

8)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9) 예컨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하 “빈집”이라 한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을 감안할 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정의규정을 신설¹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예컨대, “농어촌민박사업자”란 제11조의2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유효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점검하거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u> <u>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①</u> <u>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u> <u>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u>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u>

현행	개정안
	있다. 다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 및 설비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내용

현행	개정안
	<u>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u> <u>⑧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어촌민박은 요건을 충족한 자는 누구나 신고 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고 이후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인지·적발이 어려워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협회는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3) 대한숙박업중앙회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불법·탈법 영업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농어촌민박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시민박업, 한옥마을체험업 등 여타 숙박업종에 대한 조건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임.

4) 공유숙박중개업

공유숙박중개업 중 일부기업(에어비앤비)은 농어촌민박의 등록제가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농어촌민박활성화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주민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1)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은 신고를 요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등록을 요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u>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u>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등록하여야 한다.</u> <u>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u> ⑧ <u>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시장·군수·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요건을 충족한 자는 누구나 신고 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신고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22: 30,866개소→ '23: 33,093→ '24년 11월말 기준: 34,504).

【농어촌민박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1.
민박수	24,246	25,032	26,578	27,631	28,551	29,029	29,308	30,866	33,093	34,50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어촌민박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불법행위 의심업소가 전체 농어촌민박사업체의 5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유형별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불법 행위 의심업소 모니터링 결과】

(단위: 개소수, %)

대상	모니터링 결과					
업체수	정상 운영업소		불법행위 의심업소		확인 불가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33,830	10,135	29.96	17,564	51.92	6,131	18.1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불법 행위 의심 유형별 결과】

(단위: 업체수, 건수)

모니터링 대상	의심 유형별 결과					
업체수	객실수 위반	미신고 유기시설	공동운영	실거주 위반	연면적 초과	미등록 야영장
33,830	8,297	4,288	4,633	6,524	303	29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현행법에 따른 ‘신고’는 법령에 따라 특정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최소한의 신고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행정적 의무가 완료되며, 일단 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반면 개정안에 따른 ‘등록’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인허가 제도를 도입할 만큼 높은 규제 필요성은 없는 경우에 허가과 신고의 중간에 해당하는 제도로써 도입하려는 것으로, 주기적인 재등록을 통해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신고와 등록 비교】

구분	신고	등록
개념	사업자가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
절차	신고서 제출 후 확인만 받으면 사업 개시 가능.	신청 → 심사 → 등록증 발급 → 사업 개시
행정주체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을 단순히 접수하고, 실질적인 심사는 거의 하지 않음.	행정기관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함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 유효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점검하거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내용 요약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신고	등록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변경등록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신고	폐업신고
유효기간	없음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심사 등 주체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의2에서는 등록심사 및 등록증 교부 등의 주체로 ‘시장·군수·구청장’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에서 약칭된 ‘시장·군수·구청장’을 동일하게 옮겨온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도농교류법」에서는 각 행정행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시장·군수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농어촌정비법」과는 상이함.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약칭 비교】

구분	현행 도농교류법	현행 농어촌정비법
기초 자치 단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시장·군수등’과 별개로,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한 행정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새로 약칭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② 위임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중으로 위임하고 있음.

또한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도 같은 조 제8항에서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체계자구의 측면을 고려할 때, 각 항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규정된 부령 위임에 관한 사항을 각 항에서 삭제하고, 마지막 항에 필요한 위임의 근거를 종합하여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24년 11월 현재 3만 4,500여개소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전국에서 신고·영업 중인 점에 비추어, 농어촌민박사업 등록의 유효

11)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및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간은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보다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에서 '5년간'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적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④ 등록여부 통지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당초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두면서 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10일)이 도과한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던 규정을 「도농교류법」상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통지 규정이 잔존한 것으로 이해됨.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u>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u>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받은 날부터 <u>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u> 하여야 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는 ‘자기완결적 신고제’와 달리,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심사한 후 수리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 방식을 의미하며, 해당 신고수리의 기간이 종료되면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사례가 다수임.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의 경우와 달리 ‘등록제’를 규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등록 처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¹²⁾ 이기는 하나,

법률에 등록 통지기간을 두는 것은 행정기관이 통지 기일을 지키도록 권고적으로 유도하고, 등록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2)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등의 ‘추가등록’(2개월)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변경등록’(15일)에 대하여 통지기간을 둔 사례가 있음.

⑤ 등록증 재발급 및 반납의무에 관한 사항 추가

2025. 1. 1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2207371호)에서는 신고확인증 재발급 및 사업장 폐쇄 시 신고확인증을 반납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7371호) 신고확인증 관련사항】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⑩ 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85조 제4항 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이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장 폐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동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등록증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등록요건 신설

개정안은 제11조의2제2항에서 농어촌민박사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합한 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요건과 「도농교류법」 개정안에 따른 등록요건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음.

【개정내용 요약 : 신고 및 등록 요건】

연번	구분	농어촌 정비법상 요건	도농교류법 개정안	
			요건	비고
1	주민요건 _(법)	○	○(예외)	단, 빈집재생민박사업 제외
2	사전거주요건 _(법)	○	×	
3	실거주요건 _(법)	○	×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에는 실거주요건이 없으나 (제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및 (제25조의2)에 따른 출입·검사 규정은 실거주를 전제
4	규모기준 _(위)	○	×	
5	객실수 _(위)	×	○	
6	시설기준 _(위)	○	○	
7	단독주택기준 _(법)	○	○	
8	농어업인주택 제외 _(법)	×	○	
9	소유기준 _(법)	○	×	
10	임대요건 _(법)	○	×	

※ (법): 법률에 직접 규정, (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위임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개별 현행법과 개정안에 변동이 있는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등록요건 별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주민요건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주민요건’을 유지하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주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요건 관련 규정】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u>주민일 것</u>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u>주</u> <u>민일 것.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u> <u>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u> <u>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이는 최근 농어촌지역에 빈집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빈집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빈집재생민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안 제11조의14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함.

② 사전거주요건 삭제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는 6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전거주요건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사전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u>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u>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삭 제>

현행법에 따른 사전거주요건은 '18년 발생한 강릉지역 농어촌민박 안전사고¹³⁾를 계기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19년 법 개정으로 추가되었음.

이는 당시 외지인들이 휴가철 단기간 영업 후 폐업하는 방식으로 농어촌민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안전사고나 주민갈등 등 문제가 야기되었는 바, 신규사업자가 해당지역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가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임.

13)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농어촌민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6개월 사전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 신규진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¹⁴⁾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하는 한편, 농어촌 빈집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6개월 사전거주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19년 법개정으로 사전거주요건이 강화된 사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법을 개정하더라도 관리운영 부실문제에 대한 대책은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실거주요건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요건에서 “신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등록요건 규정에서 “실거주요건”을 명시하지 아니함.

14) 지자체 규제건의(농어촌민박사업 빈집까지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3년 이상 거주요건 완화 등), 중기부 읍부즈만 건의 등 사전거주요건에 대한 완화 요청 지속(농림축산식품부, '24.11.1.)

【실거주요건 관련 규정】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2조(정의)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u>주민이</u> 소유 및 <u>거주하고 있는</u>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u>신고자가 거주하는</u>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u>단독주택</u>(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정의) 7의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u>주민이 거주하고 있는</u> 주택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하 “빈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u>단독주택</u>(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소방안전, 시설기준의 준수, <u>실제 거주 여부 확인</u>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그런데 개정안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정의에서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 역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조항들은 해석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실거주요건을 삭제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안 제2조제7호의2, 안 제11조의2 및 안 제25조의2를 일관성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실거주요건 폐지의 타당성과 관련하여서, 농어촌민박이 당초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농림지역 등에서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숙박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비교】

구분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 용도	<u>단독주택</u>	<u>숙박시설</u>
시설규모	주택 연면적 230㎡미만	제한없음
규제	위생관리, 시설요건, 소방안전설비, 건축물기준 사업자 등록·관리 등 <u>완화</u>	위생관리, 시설요건, 소방안전설비, 건축물기준 사업자 등록·관리 등 <u>엄격</u>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5.1.20. 제출)

실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외부 투자를 통한 농어촌민박사업이 활성화 되고 농어촌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한명의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① 숙박업과의 차이가 모호해지는 측면 ② 민박업 난립으로 인한 농촌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및 농촌 자연경관의 훼손 가능성 ③ 기존 농어촌민박과의 경쟁 발생 ④ 숙박업계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함.

또한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부재에 따른 민박 부실관리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12.26.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내국인의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독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의 실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 관련 숙박업계의 반대 등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논의 진행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촌민박 실거주기준 완화 및 유지 근거】

실거주 규제완화 필요성	실거주 규제완화 부작용
· 적극적 빈집 활용 가능 · 외부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다양한 숙박시설 이용가능, 관광산업 활성화	· 농촌지역 난개발 및 투기우려 발생 ·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숙박업자 등과의 형평문제 제기 · 민박업난립 및 농촌주거여건 및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 · 운영자 부재로 민박 관리 부실 우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면적인 실거주요건 삭제보다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에 한정하여 실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빈집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제2조와 및 제25조의2를 고려하여 실거주 요건을 두는 경우 제 11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의 하나로 실거주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주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경우는 개념적으로 실거주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문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15) 예컨대, 2.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일 것, 다만,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주택규모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농어촌민박사업 포함 ※현행법에 따른 면적기준은 주택연면적 230㎡ 미만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 및 설비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제81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은 농어촌민박 규모기준을 주택연면적 23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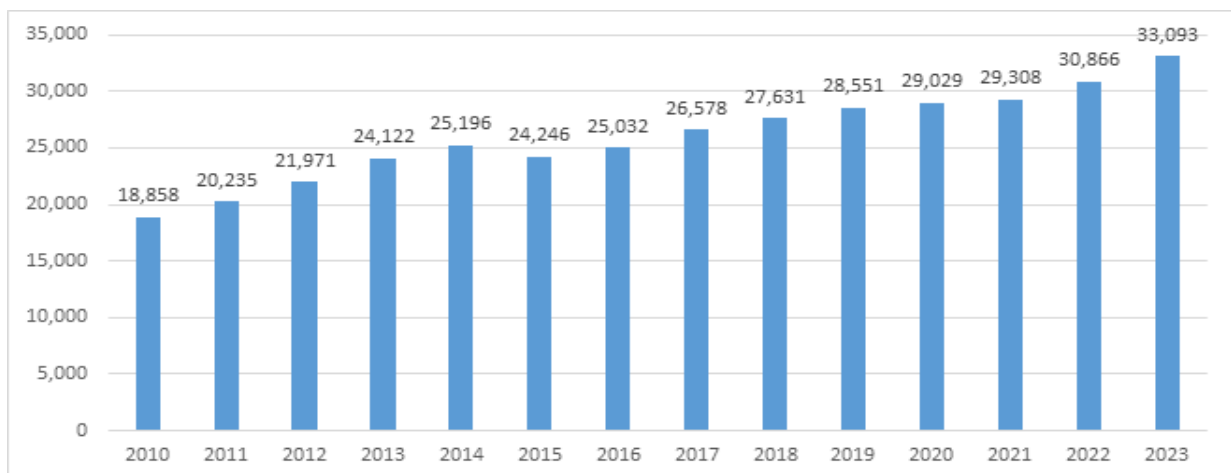
2. 시설기준(생략)

그런데 최근 농어촌 자연경관과 휴식을 경험하려는 도시민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숙박을 원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농어촌민박 추이('10년~'23년 기준)】

(단위: 개소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소수	18,858	20,235	21,971	24,122	25,196	24,246	25,032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개소수	26,578	27,631	28,551	29,029	29,308	30,866	33,09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그런데 현재 농어촌민박의 규모가 230㎡미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규모에 바베큐시설·수영장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되게 됨.

따라서 보다 넓은 독채에서 따로 묵으려는 관광객 수요의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바베큐시설·수영장 등 부대시설 이용을 원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면적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완화 요구 사례】

□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 농어촌민박 규모기준 확대 및 식사 허용 관련 요구
 - '23.6월부터 '24.1월까지 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규제 개선 발표

□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에 대한 심의 및 제도개선 의결('24.2월)

□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

- 규모기준 완화 및 식사제공 허용 등 다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

의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농어촌민박이 당초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농림지역 등에서 기존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숙박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도입된 제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비교】

구분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숙박시설
시설규모	주택 <u>연면적 230㎡미만</u>	<u>제한없음</u>
규제	위생관리, 시설요건, 소방안전설비, 건축물기준 사업자 등록·관리 등 <u>완화</u>	위생관리, 시설요건, 소방안전설비, 건축물기준 사업자 등록·관리 등 <u>엄격</u>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면적규제를 완화할 경우, ① 투자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 ② 농촌 지역주민의 주거여건 및 농촌 자연경관의 훼손 가능성 ③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기존 소규모 농어촌민박과의 경쟁 및 격차 발생할 가능성 ④ 숙박업계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농가소득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 관광객 수요 충족 등의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주여건악화,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등 규제유지 필요성에 대한 비교형량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어촌민박 면적기준 완화 및 유지 근거】

구분	규제완화 필요	규제유지 필요
경제적 측면	· 유흥자원활성화를 통한 농가 창출 ·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 기존 소규모 농어촌민박과의 경쟁 · 기존 숙박업계의 규제 역차별 · 도시민박 등의 형평성 문제 제기
사회적 측면	· 소비자 선택 및 체험 다양화	· 인근 거주민 정주환경 악화 ·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한편,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면적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되, 객실수 제한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만을 하도록 하고, 면적제한을 두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별도의 면적 기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시행령 등에 일정 수준의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이 경우,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¹⁶⁾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11조의2제2항제2호는 하나의 호가 전단(본문), 후단 및 단서로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구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문구를 수정¹⁷⁾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⑤ 객실 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안 제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 및 시설 및 설비’를 등록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② <u>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u>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농어촌민박사업 포함 ※현행법에 따른 면적기준은 주택연면적 230㎡ 미만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u>객실 수와 시설 및 설비</u>

개정안 농어촌민박사업의 면적기준을 삭제하면서 면적기준 삭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제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를 충족하도록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과도한 대규모화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임.

16) 예컨대,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7) 예컨대,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제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관련 연구용역¹⁸⁾ 결과와 과거 「숙박업법」에 따른 여관업 시설 기준(10실 이상),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요건(10실 이하), 선진국 펜션시설 규모(약 10실) 등 고려 할 때 객실 수 상한은 10호실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편, 제11조의2제2항제3호는 ‘객실수’ 뿐 아니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등록요건도 두고 있는데 이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의 위임근거를 이관해 온 것으로 보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시행규칙은 [별표3]에서 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② 위생적 조식제공을 위한 시설 ③ 가스 누출 예방시설과 관련된 시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도 유사한 규정을 담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설명하고 있음.

※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생 략)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 어 촌 민 박 사	기본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18)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2023.12.)

※ 관련규정

업		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도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 위 항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 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농어업인주택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주택은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일부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신 설>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¹⁹⁾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농어업인이 농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주택임.

이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고

19)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회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려할 때 농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 한 바 있음(법제처 23-1022, 2024. 4. 12.,)

개정안은 이러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에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제11조의2제2항제2호는 하나의 호가 전단(본문), 후단 및 단서로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구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호를 2개로 나누어 문구를 수정²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 예컨대 3.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내의 주택일 것.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면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제외한다.

⑦ 소유요건 및 임대요건 삭제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임대를 통한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주택 소유요건과 임대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u>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u>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u> <u>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u>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u><삭 제></u> <u><삭 제></u>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 소유 및 임대요건은 '18년 발생한 강릉지역 농어촌민박 안전사고²¹⁾를 계기로 '19년 법이 개정되어 추가된 요건임.

당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중 일부는 직접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유주가 아닌 운영자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부각되었음.

이에 운영자와 주택 소유자의 일치를 통해 시설 관리 및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소유요건의 강화로 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진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 및 농촌관광의 활성화가 저해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 소유요건, 예외적 임대요건'을 삭제하여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확대가 가능해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농어촌에 만연한 빈집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농촌 이주 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농어촌민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다만, 당초 소유요건의 도입이 농어촌민박의 시설관리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⑧ 주택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추가

개정안은 제11조의2에서 농어촌민박의 요건으로 ① 주민요건 ② 주택요건 및 ③ 객실수 등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만으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하려는 주택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²²⁾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정의규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다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것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등록요건에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하려는 주택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 결격사유 신설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등록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현행	개정안
	<u>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u>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두어 부적격자를 걸러냄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협회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정적인운영과 신뢰확보를 위하여 결격사유 신설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특정 신분을 취득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다만, 결격사유는 해당 사유를 가진 자를 특정 직업이나 사업에서 배제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고 도입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 규정】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제’의 경우 결격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기 어려워 농어촌민박사업을 적합한 사람이 운영하도록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는 자의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부적격자의 농어촌민박사업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는 자로서, ① 피성년후견인 ②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성폭력범죄 행위²³⁾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²⁴⁾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²⁵⁾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민박사업과 유사한 업종을 살펴보면,

① i)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제), ii)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등록제)은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고 있고,

② i)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등록제), 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제), 관광편의시설업(지정제)과, ii)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업(허가제, 등록제) 및 청소년야영장업(허가제, 등록제)은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이하에서는 유사업종의 결격사유와,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와의 차이점 및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유사업종 결격사유 현황】

법률(소관부처)	숙박업 명칭			결격사유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고제)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
제주특별법 (제주자치도)	휴양펜션업(등록제)			-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제)	호텔업	관광호텔업	(해당 업을 하려는 자)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2. <u>파산선고</u>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u>이 법에 따라</u>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u>승인이 취소</u> 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u>영업소가 폐쇄</u> 된 후 <u>2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생략) 4. <u>이 법을 위반</u> 하여 <u>징역 이상의 실형</u> 을 선고받고 그 <u>집행이 끝나거나</u>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u>받지 아니하기로</u> 확정된 후 <u>2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관광객편의시설업 (지정제)	관광펜션업(펜션)			
	한옥체험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유스호스텔 (허가제, 등록제)			(수련시설의 대표자) 1. 미성년자·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파산선고</u>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u>금고 이상의 형</u>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u>2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u>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u>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u> 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u>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u> 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u>2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야영장업 (허가제, 등록제)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1) 미성년자 불포함에 관한 검토

유사업종의 사례와 달리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농어촌민박사업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음.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별도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성년자가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점, 농어촌민박사업은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 결격사유를 둘 경우 가족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어촌민박을 미성년자가 상속하게 되는 경우 농해당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임.

현재 미성년자의 농어촌민박업 신고 사례는 4건임.

【미성년자의 농어촌민박 신고사례】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23년말 기준)

지역	운영자 생년월	신고일	신고당시 나이	현재 나이
전북 진안군	2000년7월	2017년5월	만16세	만24세
경북 경주시	2003년3월	2021년7월	만18세	만21세
제주 제주시	2002년11월	2021년5월	만18세	만22세
제주 제주시	2002년12월	2021년1월	만18세	만21세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다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 능력 및 책임에 제한이 있다는 점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2) 피한정후견인 불포함에 관한 사항

유사업종의 사례와 달리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두지 아니하고 피성년후견인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이는 2013년 7월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개편된 취지를 반영하여,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민법」상 행위능력 제도 변화 】

종 전		개 정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3)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불포함에 관한 사항

유사업종의 사례와 달리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를 재건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가 법률상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를 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농어촌민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성범죄자에 관한 결격사유

유사업종의 사례와 달리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결격사유로 제4호 및 제5호에 각각 성범죄 이력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두는 것은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성인에 대한 금고 이상의 성범죄 시 10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시 영구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업종의 경우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직역인 청소년지도사,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장애아돌보미의 경우에도 성범죄자(형 또는 치료감

호)의 결격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인 대상 범죄(100만원 이상) 및 미성년자 대상 범죄(형 또는 치료감호)를 저지른 경우, 영구히 해당 직역으로부터 배제하고 있어 개정안보다 높은 수준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2020헌마1605, 2020헌마1181)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24. 12. 3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개정된 사례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성범죄 관련 결격기간의 필요성 및 그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투숙객의 안전보장 등 그 입법 필요성, 유사업종의 결격사유와 비교하여 평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의 위반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입법례】

구분	성인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대상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인, 아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	
체육지도자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그 전부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면제된 날부터 20년 미경과한 사람 (벌금형) 확정된 날부터 10년 미경과한 사람	
청소년지도사	(형 또는 치료감호)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미 경과한 사람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장애아돌보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성인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된 사람(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사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성인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	성인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된 후 3년 미경과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지방공무원	<※추가범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죄 ②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정신건강 전문요원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11조의3제4호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호에서 “최대”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 기타 결격사유 추가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면, 간호사, 의사, 아이돌보미, 특수경비원 등 특정 자격이나 직역의 경우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한편, 특정 사업의 허가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경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에 존재하며,

결격사유는 아니나, 「공중위생관리법」²⁶⁾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를 공중위생업소의 사업장폐쇄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장에 거주하여 투숙객과 같은 장소에 머무른다는 점을 고려해, 투숙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

26) 공중위생업 운영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결격사유는 없고, 사업장폐쇄등의 사유로 하고 있음.

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배제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도입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동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경우, 정신질환 여부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의 마련 없이 결격사유만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둔 예】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 간호사등, 특수경비원, 위생사, 산후조리도우미, 특수경비원, 수산질병관리사,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수의사, 조리사, 실험동물시설 운영관리자, 실험동물 공급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이돌보미, 수렵면허, 약사면허, 한약사면허, 어린이집 설치·운영, 유치원설치·운영,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장례지도사, 장애아 돌보미,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보조공학자, 장애인활동보조인력, 정신건강 전문요원, 철도운전면허, 초·중등교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 제조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6) 폐쇄조치의 결격사유 추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의12제5항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따른 사업정지, 등록취소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 제11조의3제2호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폐쇄조치’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아니함.

무등록 영업으로 법의 테두리 외에서 영업한 사례가 등록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보다 그 잘못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폐쇄조치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서 추가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유사입법례인 「관광진흥법」²⁷⁾의 경우에도 폐쇄조치를 받은 후 2년간 영업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의 하나로 추가하고 있는 바, 무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7) 2.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유사 입법례】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같은 사업장에서의 등록 금지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고 6개월내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해당 사업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4(같은 사업장에서의 등록금지) <u>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u>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거주 의무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의 단기적 운영과 폐업이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사업장에서의 등록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제86조제2항 및 제3항²⁸⁾에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 중 하나로 사전 거주 요건(주택 소유 6개월, 임대 3년)를 두고 있음.

이는 휴가철, 성수기 등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²⁹⁾ 및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온 바, 단기간 내 등록·폐업의 반복을 방지하고자 '20. 2. 11.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마련된 규정임.

해당 규정은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며, 농어촌 지역의 질서와 경관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러한 사전 거주 요건은 귀농·귀촌인, 청년·은퇴자 등이 농어촌민박사업에 진입하는데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측면 역시 존재함.

28)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9) '18년 발생한 강릉지역 농어촌민박 안전사고: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농어촌민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이에 개정안은 진입장벽인 사전 거주 요건을 삭제하되, 기존 요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기 운영(6개월 이내) 후 폐업한 사업장은 일정 기간(1년)이 지나야만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안은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에 한하여 일정 기간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보다,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우회등록 할 수 있다는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같은 영업장소에서 일정기간 다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14,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일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도 폐쇄명령이나 허가취소 등이 있는 이후에 일정 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발적 폐업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누구든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업법례】

구분	사례	사유	대상
「자본시장법」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발적폐업	같은사람 영업장소 무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폐쇄명령을 받은자, 1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 불가	폐쇄명령	같은사람 영업장소 무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장소에서 1년간(성매매알선법 위반사유) 또는 6개월간(그외 사유) 같은 종류의 영업금지	폐쇄명령	누구든지 같은 영업장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허가 취소된 장소에서 6개월간 같은 종류의 허가금지	허가취소	누구든지 같은 영업장소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는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

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 개정안은 ‘자발적폐업을 한 자’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누구든지’ 다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누구든지”를 추가하여 보다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되,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5(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투숙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간판,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

현행	개정안
	<u>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 6. <u>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u> 7. <u>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및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또한 같다.</u> ② <u>제1항제4호에 따른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u>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면서 필요한 조문을 추가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농어촌민박의 조식 이외 식사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에서 「식품위생법」 의제기준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 인허가 의제가 될 경우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은 당연한 의무가 되므로 제1항제5호의 후단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협회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사항과 식사제공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숙박업(숙박업중앙회)·요식업(식품산업협회)의 사례와 같이 협회가 주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이하에서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달라지거나 추가되는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1) 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1호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1조의5조제1호 및 제2호는 등록증 및 요금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투숙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u>잘 보이는 곳에 게시</u> 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투숙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투숙객의 경우 현장에서 예약하기 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하는 것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여도 되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철도사업법」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2) 상호사용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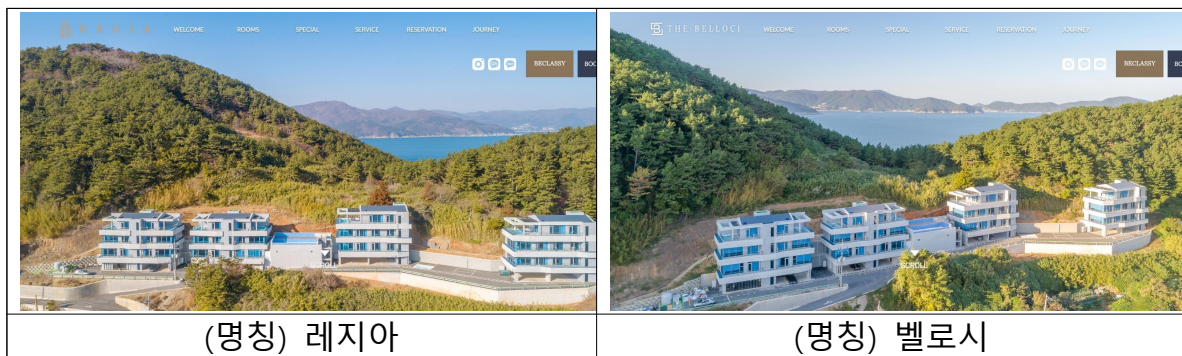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간판,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신 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간판,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 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신고된 민박의 명칭과 실제 운영사 사용하는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동일한 사업장을 다른 명칭으로 이중 광고하거나, 별개의 농어촌민박 여러 채를 마치 하나의 리조트 단지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농어촌민박 투숙객도 해당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동일 사업장에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한 사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홍보 등에 사용하는 상호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당시에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3)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가 실시하는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u>시장·군수·구청장이 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u>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u>매년</u>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은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u>

현행법에 따르면 별도의 교육 이수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개정안은 해당 교육을 매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현행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안전교육 주체가 지자체와 협회로 이원화되어 지자체별 통일된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하고,

현재 공중위생 영업자, 식품접객업 영업자과 같이 위생·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관련 협회³⁰⁾에서 해당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21년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소방·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지정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 제2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관련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신고한 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고 있음.

30) 숙박업자 교육은 숙박업중앙회, 식품접객업자 교육은 식품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수행중

이는 직접 해당 영업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교육을 받고, 위생 등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이와 같은 입법례와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제11조의14에 따라 등록한 빈집재생민박의 경우 사업자와 관리자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자의 경우도 교육을 받도록³¹⁾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31) 4. 농어촌민박사업자(빈집재생민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매년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조식 이외의 식사제공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u>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u> ,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u>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u> ,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와 제86조의2제4호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만을 제공할 수 있음.

이는 '15. 1. 6.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추가되어 10년 동안 유지된 규정으로서, 농어촌민박의 투숙객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위해 식사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을 반영하되,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규모 음식점업과 다르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엄격한 조리시설 기준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식’으로 한정된 것임.

【농어촌민박과 일반음식점업 비교】

구분	농어촌민박사업	일반음식점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식품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에서만 가능
제공가능 식사	<u>조식만 가능</u>	<u>제한없음</u>
시설규모	주택 연면적 230㎡미만	제한없음
규제	시설기준, 위생관리, 식자재·조리기준, 청결·소독, 행정처분 및 점검 등 <u>완화</u>	시설기준, 위생관리, 식자재·조리기준, 청결·소독, 행정처분 및 점검 등 <u>엄격</u>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농촌경제과.(’25.1.20. 제출)

그런데 최근 농어촌민박에서 조식 이외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완화 요구 사례】

-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 농어촌민박 규모기준 확대 및 식사 허용 관련 요구
 - ’23.6월부터 ’24.1월까지 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규제 개선 발표
- (중기부) 기업현장 규제애로 중점정비 과제
 -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및 승계 허용, 조식 외 식사 제공, 신고요건 완화 등 다수
-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
 - 규모기준 완화 및 식사제공 허용 등 다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농촌경제과.(’25.1.20. 제출)

농어촌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농어촌민박 투숙객의 편의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농어촌민박 주변의 음식점 등 지역 상권과의 충돌문제 및 음식점업과의 형평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농어촌민박에서의 식사제공 여부는 식사제공의 장점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농어촌민박과 유사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³²⁾의 경우는 조식 이외 식사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농어촌민박은 일반음식점업과 달리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함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촌민박 조식제한 완화 및 유지 근거】

구분	규제완화 필요	규제유지 필요
경제적 측면	· 유흥자원활성화를 통한 농가 창출 ·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 도시민박업 등과의 형평문제 (도시민박업은 조식이외의 식사제공 가능)	· 일반음식점업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 (엄격한 규제, 행정처분, 점검) · 숙박업자와의 형평문제 (숙박업자는 룸서비스 제공하려면 휴게음식점업 허가 필요, 건축물 용도 변경 필요) · 지역상권과의 충돌 문제 제기
사회적 측면	· 투숙객 편의 강화	· 위생·품질상의 문제 발생 가능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32)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

5)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이수 의무화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u>조식</u> 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u>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를 때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과 같은 시설기준, 위생관리, 식자재·조리기준, 청결·소독, 행정처분 및 점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농어촌민박이 제공하는 식사를 ‘조식’으로 한정하되, 주택 기반 운영을 감안하여 대규모 음식점업과 다르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엄격한 조리시설 기준을 갖출 의무를 면제한 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조식 이외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식만 제공하는 경우보다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하되,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 갖추어야 하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전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을 조례로 두려는 취지로 보이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³³⁾,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별표14]³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고,

33)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34)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2) 조리장, 3) 급수시설, 4) 화장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사를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완화된 시설기준을 정할수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로 식품접객업의 일반적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선례 또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근거를 현행법에 두되, 식품위생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³⁵⁾을 제시하였음.

다만, 해당 규정이 제11조의5(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을 적용받는 외에 현행법에 따른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과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5)

도농교류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의견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 -----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의무 삭제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 받을 의무를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부과되, 확인서 보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삭제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 <u>전기사업법</u> 」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 <u>전기안전관리법</u> 」 제1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첫째, 2020.3.31.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규정은 삭제되고,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³⁶⁾로 이관되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규정 이관사항을 반영

36)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는 확인서를 보관할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확인서를 제출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 안전점검 이후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받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가스 안전점검 결과 시설 기준등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수요자에게 기준에 맞도록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법률로도 이미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 이행이 담보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근거가 없는 확인서의 보관 및 제출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7) 통신중개판매업자에 대한 농어촌민박표시 의무 부여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하여금 출입문 또는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역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및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u>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또한 같다.</u>

통신중개판매업자는 인터넷, 모바일 앱, 또는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예컨대, 네이버, 야놀자 등)를 의미함.

개정안은 농어촌숙박사업자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홍보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하는 모든 경로에 농어촌민박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미신고 숙박영업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개정안 제28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 통신중개판매업자는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고려할 때, 대상별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식품위생법」 의제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투숙객 대상 조식 외 식사 제공을 전면 허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신고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 6 신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위생법」 의제 규정을 두어 보다 간소한 절차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안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의제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 등이 당연한 의무가 되므로, 교육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조식 외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엄격한 시설·설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특례적용을 통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시설·설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11조의 5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허가 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된 여러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서 도입된 이후 100여개 이상의 법률에서 규정³⁷⁾하고 있음.

개정안은 같은 취지로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의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과거에는 인허가의제에 대한 절차적 요건 준수, 사후관리·감독 등에 관한 공통적이고 표준적인 규정이 없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

37) 2021. 3. 31. 기준 116개 법률에서 규정(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4)

에 법 적용상의 혼란이 있어 온 측면이 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행정기본법」이 제정(2021. 3. 23. 제정, 2023. 3. 24. 시행)될 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에 관한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촌정비법」 등 농업분야 6개 법률, 「항만법」 등 해수분야 15개 법률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경우도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의 법조문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정안의 “시설·설비 구비 및 식품위생 관련 교육 수료”한 경우를 주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 등록을 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관련규정】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를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3. 3. 24.]

7. 농어촌민박사업표시제한 및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규정 이관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표시제한 및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7(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11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1조의8(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표시제한 및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규정은 계속 적용될 필요가 있어 이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농어촌민박사업 표시 제한’의 규정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숙소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시설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박 투숙객이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계속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됨.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및 [별표3의3]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규정은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고객의 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³⁸⁾에도 유사한 조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법 이관 후에도 필요한 조항으로 그 이관의 타당성이 인정됨.

38)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8. 보험가입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9(보험 등 가입 의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사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동 시행령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및 [별표3]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시설의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보험료는 보험사별 상품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민박(주택) 규모 100㎡당 연 2만원 수준임³⁹⁾.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농어촌민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도농교류법에 포함하여 규정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식사제공 등으로 이용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상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사업장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이행 유도를 위한 조치를 두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3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5.1.14.)

【유사입법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농어촌민박사업의 승계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실거주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지위승계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승계)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u>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지변경 등 환경변화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 생계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농어촌민박의 상속 승계 규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사업자의 지위승계는 영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영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함.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따르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휴양단지·관광농원)은 사업의 양수·양도, 상속, 법인 합병 등의 경우 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지위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주민요건, 사전거주요건, 소유요건 등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다수 존재하여 사업의 양수 양도 등에 따른 지위승계가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양도나 합병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고,

사업자 사망 이후 상속인이 새롭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고 하여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입지변경’에 따라 상속자의 농어촌민박신고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민원도 제기⁴⁰⁾되고 있음.

특히 민박으로 사용하던 주택은 그 구조가 민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매매가 쉽지 않고, 당초 상속인

40)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건의

과 피상속인이 함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주택에 한하여 지위 승계 인정이 필요한 면이 있음.

【입지변경으로 인한 민박신고 불가능 사례】

- 생산관리지역에서 민박업을 하다가 용도지역이 변경(생산관리지역→ 주거지역 등)되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민박 운영(재산권 보전)은 가능하나, 운영자 사망 이후 배우자 등이 주택을 상속하였을 경우 민박신고 불가로 생계 등에 차질 발생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개정안은 이에 따라 상속주택에 한하여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한편, 상속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에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등록 유효기간의 도과로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입지변경(예컨대 농촌지역→도시지역)’이 발생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11(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u>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지도·감독 등 규정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 조문의 단순 이관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1.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고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불법적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외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사유도 일부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객실 수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6.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7. 제11조의9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의11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개정안
	9.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1.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제6호 또는 제10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시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있던 규정을 현행법에 이관·정비하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이하에서는 「농어촌정비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추가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을 한 경우

개정안은 제11조의12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을 한 경우”를 필요적 등록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u><신 설></u>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u>제2호</u> ,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u>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을 한 경우</u>

이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따른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사유에는 존재하지 않던 조항으로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법에 따른 신고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① 신고 이후 등록인이 아닌 사람이 민박업을 영위하거나, ② 신고 이후 실거주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③ 불법 증축 등으로 주택 규모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례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제2호에 따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경우’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이 당연 취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11조의12제1항제4호⁴¹⁾에서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객실 수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면서 등록취소뿐 아니라 영업정지·사업장 폐쇄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함께 고려해⁴²⁾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1) 4.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객실 수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2)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영업정지·등록취소 및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있음.

이는 비활동 사업자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등록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사업을 중지할 수 있었던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대체로 입법례가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여름 휴가철 등 특정시기에 투숙객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일시적 자금난이나 팬데믹·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외부요인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업법례】

연번	법률	사업자	중단기간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소분·조합·수입·판매자	6개월
2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자	6개월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제조사업	1년
4	도시가스사업법	천연가스수출입업	1년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회사	1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묘생산업자	1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정제업자	1년
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1년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1년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자	1년
11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	1년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상담회사	1년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3) 영업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안은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사업장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신 설>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런데 법률에 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공익과 법질서를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사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따라서 등록 당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을 하였더라도, 등록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등록취소 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유사입법례의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허가취소 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유사입법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안 제11조의12제1항제5호는 단서에서 해당 법인의 임원 중에 제11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 개임(改任)하면 등록취소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인의 등록취소는 사업자 뿐 아니라 종사자, 거래처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이 결격임원 교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다수 입법례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제11조의3⁴³⁾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는 임원의 개임으로 해소 가능하도록 하면서, 제5호의 결격사유는 임원 개임으로도 해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 중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만 개임으로 해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3)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사입법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자구의 측면에서 한자어 표현인 ‘개임’을 알기쉬운 우리말인 ‘바꾸어 임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은 제11조의9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정지, 등록 취소 및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신 설>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11조의9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험·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은 미가입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록·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입법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입법례를 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5)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조항을 이관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u><신 설></u>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단서생략)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규정을 단순히 이관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11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성인 대상 성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제11조의12제1항제5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이후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1조의12제1항제5호와 같은 항 제10호는 모두 성범죄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①, ②) 결격사유인 제8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로 하고, ③ 제8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형의 확정 이전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 경우는 ‘재량적 사업정지, 등록취소, 사업장폐쇄 사유’로 두는 등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성범죄 관련 규제】

조문	대상	결격여부	등록취소	검토의견
제89조 제2항 제5호	①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자(제11조의3제4호)	10년간 결격사유	등록취소 가능	필요적 등록취소
	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제11조의3제5호)	영구히 결격사유	등록취소 가능	필요적 등록취소
제89조 제2항 제10호	③ 「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 「 <u>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u> 」 또는 「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결격사유 미해당	등록취소 가능	등록취소 가능

6) 등록 취소 후 일정기간 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사업장 폐쇄 이후 사업 금지조항을 현행법에 이관해 오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u>사업장 폐쇄명령</u>을 받은 후 6개월(<u>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u>)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u>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u>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u>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u>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2.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u>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제6호44) 또는 제10호45)의 경우에는 1년</u>)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u>등록이 취소된 장소</u>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u>제1항제6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u>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44) 6.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45)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안에 따른 사업불가 사유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등록) 불가 사례】

구분	6개월 내 자발적 폐업	등록취소	
		제1항 각호 위반 (제6호 제10호 위반 제외)	불법카메라, 성범죄통보 (제1항제6호·제10호 위반)
같은 사업장	1년간 사업 불가 (제11조의4)	6개월간 사업 불가 (제11조의12제2항)	1년간 사업 불가 (제11조의12제2항)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① 우선 같은 사업장에서의 사업(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i)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폐업을 한 장소에서는 1년간(제11조의4) ii) 이 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등록취소를 당한 장소에서는 6개월간(제11조의12제2항), iii) 그 중 성범죄로 통보를 받은 경우나 불법카메라 설치 등으로 등록취소를 당한 장소에서는 1년간(제11조의12제2항)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귀책사유인 법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사업장에서는 6개월간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반하여, 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사업장에서는 1년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한편, 같은 사업자의 사업(등록) 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i) 제11조의3제2호에서는 이 법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경우는 사유 불문하고 2년간 결격사유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ii) 제11조의12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10호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자에 한하여 2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두 개의 조항의 적용범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다 적용 범위가 좁은 제11조의12제3항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같은 사업자의 사업(등록) 불가 사례】

구분	결격사유 (제11조의3제2호)	등록취소 이후 재사업 금지 사유 (제11조의12제3항)
대상	등록 취소된 모든 자 (제1항 각호)	불법카메라, 성범죄통보로 등록취소된 자 한정 (제1항제6호·제10호 위반)
기간	2년간 사업 불가	2년간 사업 불가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7) 체계자구 관련

개정안 제11조의12제2항 및 제3항에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된 이후 사업금지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에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기준 위임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5항에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불이행에 따른 사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 제11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는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뿐 아니라 ‘사업장 폐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 해당 조문의 취지 및 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⁴⁶⁾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11조의12제6항의 경우 문장을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호로 분리하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⁴⁷⁾.

46) 예컨대,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날부터 6개월(제6호 또는 제10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7) 예컨대,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그 승계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1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해당 사업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행한 이후 폐업한 사업장에서 새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 누구든지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 왔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현행 조문이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행한 이후 폐업을 하고, 같은 사업자가 다시 신고 영업하는 경우에 승계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1) 행정제재처분 승계대상 명확화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폐업 신고 이후 다시 농어촌민박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된 2009년 12월부터 동 조를 같은 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로 해석하여 적용하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만으로는 ①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재신고하는 경우(같은 사업자 대상)에 대한 규정인지,

②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신고한 장소에서 새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경우(같은 사업장 대상)에 대한 규정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제90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면서,

현재 해석이 모호한 「농어촌정비법」 제90조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u>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u> 1. <u>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u>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u>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u>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1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u>폐업신고 후 해당 사업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u>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u>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u>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도 여전히 폐쇄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신고를 한자는 누구든지 종전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행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

므로 해당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일부 문구의 수정⁴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⑨ 영업자가 그营业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48) 예컨대, 제11조의1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그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는 누구든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2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2) 행정제재처분 승계 유효기간 신설에 관한 사항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효력의 승계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무한정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되는 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여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생략)	제11조의1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해당 사업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u>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u>

다만, 제11조의2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은 ① 등록취소 ② 영업정지 및 ③ 사업장 폐쇄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영업정지 처분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 및 사업장 폐쇄 처분은 해당 처분의 만료일이 정해지지 아니하므로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행정제재처분 승계기간을 “행정처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빈집재생민박사업 운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거주요건이 없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위한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1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14(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①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단체일 경우 그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활인구 유입 수단으로 빈집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의 하나로 빈집재생민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협회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도입에 대하여 당초 경쟁심화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하였으나, 현재는 수용한다는 입장임.

3) 대한숙박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는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농어촌 소득 보전 대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실거주 요건이 없는 법인의 농어촌민박업 진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1) 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 필요성

개정안은 현재 농촌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농촌빈집은 총 65,019동으로 2018년의 38,988동 전체 농촌빈집의 11.9%인 7,739호가 정비되었으며, 그 중철거는 7,538호, 활용은 201호로 빈집활용률은 전체 정비건수 중 2.6%에 그치고 있음.

[농촌 빈집현황 및 빈집 철거·활용 현황]

○ (빈집현황) '23년 기준 농촌 빈집은 65,019동

○ (정비현황)'23년 기준 총 정비건수 7,739호

‘23년 실적 중 철거는 7,538호, 활용은 201호로 빈집활용률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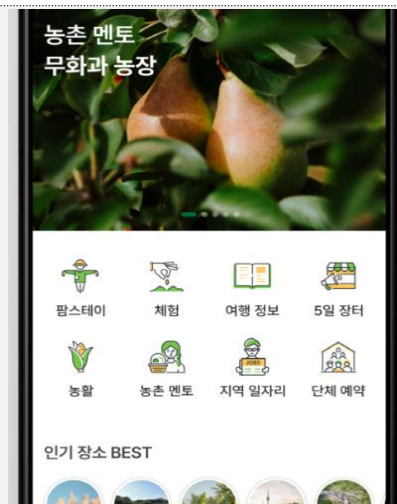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28. 제출)

이러한 통계를 살펴볼 때 농촌빈집의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⁴⁹⁾”(∼26)를 운영하고 있음.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개요】

- (주요내용)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10년)하여 재생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시설로 제공,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
- (실증특례 기간) '22. 1. 27 ~ '24. 1. 26 * '26.1.26.까지 연장
- (실증특례 연장, 1회 限 2년) 추가적인 사례검증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 부가조건 등을 완화*하여 농촌소멸위험지역에 적용·확대 시행
 - * ①지역 확대(5개도→전국) ②영업일 제한(300일) 폐지, ③증축제한 완화(230㎡이내 리모델링), ④활용 가능 건축물 확대(단독주택→부속 건축물 추가), ⑤매매 허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49)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동 실증특례는 ‘주민’ 또는 ‘거주’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함)’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적용하여 빈집에서 숙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현재 실증특례에 따라 운영중인 빈집활용 공유숙박 현황은 10개에 불과함.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 현황】

○ (주)다자요(특례기간 '22.1.27.~'24.1.26., 기간연장 ~'26.1.26.)

연번	숙소명	주소지	건축연도	주택면적(m ²)	사업개시일
1	북촌포구집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71-2	미상	136.14	'22.1.27.
2	신평녕쿨집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 975	1977	74.59	'22.4.25.
3	월령바당집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435	미상	83.55	'22.5.2.
4	하천바람집(밖거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763-2	1992	46.49	'22.5.2.
5	하천바람집(안거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763-1	1948	181.79	'22.5.12.
6	두모옴팡집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845-1	1974	92.51	'22.5.12.
7	안성캠프96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096-1	1974	64.55	'22.12.27.
8	안성강생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099	1995	80.23	'22.12.27.
9	고산도들집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61	1966	66.12	'23.7.17.
10	영락리(숙소명 미정)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87-2	1960	56.19	-

○ (주)엑팅팜(특례허용일 '24.4.26.): '25.3월 사업개시 예정(경기도·전남)

○ 싸이트지니(특례허용일 '24.10.17.): '25년 상반기 사업개시 예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농어촌빈집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이를 민박으로 중개하는 현행
실증특례는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당초 농어촌민박이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우대조치
로 입지, 세제, 시설기준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거주하
는 주민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당초 농어촌민박협회는 농어촌민박업의 상업화 및 경쟁 심화 등을
우려하여 빈집재생민박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경우도 빈집재생민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점,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하지 아니하는 입
장으로 선회함.

상기 찬반 양론과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빈집재생민박업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법인·단체의 자본금 기준에 관한 검토

개정안은 개인, 법인, 단체가 빈집재생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인·단체는 그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업의 인·허가시 자본금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일 것을 규정하여 안정적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입법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일정금액 이하의 자본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농어촌민박사업에 거대자본 또는 대기업이 진출하여 대규모 숙박업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 자본금 금액을 대략 3억원⁵⁰⁾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른 ‘단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조항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법적 용어로서 상법상 법인의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회사가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과정에서 출자받은

5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요건 중 자본금을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 빈집재생민박사업이 가능한 법인의 자본금은 그 이하로 규정하려는 취지

재산의 총액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등의 경우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단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서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법인으로 한정하거나, 법인 이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등 적절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조항을 두는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에 한정하여 자본금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자본금 제한의 경우 이를 현행 조에 두기보다 안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관리인에 관한 검토

개정안은 제11조의14제2항에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빈집재생민박은 주민요건과 실거주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타지역 거주자 또는 법인 등이 이를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사업주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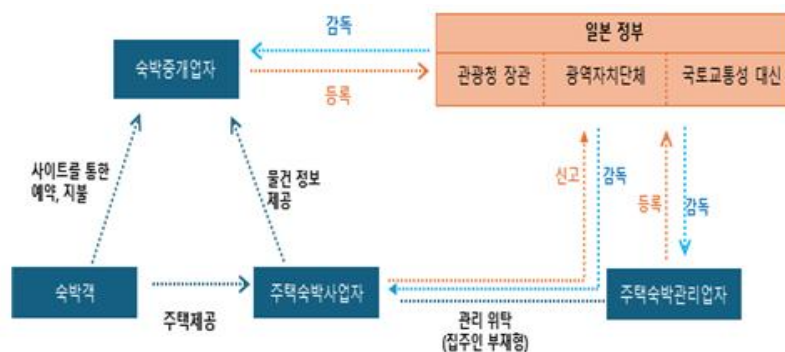
이에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유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신민박법)」을 시행해 민박업을 사업자 ‘실거주형’과 ‘부재형’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 집주인의 거주 없이도 민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년 중 운영 일수 상한을 두고, 운영 중 안전 및 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인을 두거나 위탁하도록 하여 빈집활용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해외사례(일본)】

- 도쿄올림픽 등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단기 임대를 허가하는 ‘주택숙박사업법(신민박법)’ 시행(‘18.6월)
- 기존 일본의 ‘여관업법’과 달리 집주인 또는 대리인의 상주 의무 해제, ‘가주 부재형’의 경우 ‘주택숙박관리업자’에게 위탁 필요
 - * 숙박일수는 신고된 주택별 1년 180일(실제로 사람을 숙박시킨 일수 기준) 이내로 제한
- ‘주택숙박관리업’은 등록(국토교통대신)과 함께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다만, 개정안에 따를 때 관리자가 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관리자의 역할 등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관리인에 관한 위임근거를 두는 방안과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벌칙 또는 과태료를 두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품질관리인)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조례 위임사항에 관한 검토

개정안은 빈집재생민박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영업일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24. 1. 제도 개선 이전의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 규제실증 특례에서 연간 300일 이내의 영업일수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영업일수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지역별 농어촌민박사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영업일수 제한을 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빈집재생민박의 안전관리사항에 관한 내용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사항 외에 안전시스템 구축(보안전문업체, cctv 등),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비치 등이 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하고 있음.

14. 민박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필요한 경우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15 및 제11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15(민박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이 밀집되어 있을 것 2.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의16(지정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1. 제11조의15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u> <u>2. 주변경관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u>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경관이 수려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춘 곳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정규모 이상의 민박이 밀집된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이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됨.

또한 공동의 체험 프로그램이나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농어촌민박단지를 해당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거점으로서의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민박단지 조성 가능 지역(예시)】

강릉 경포대	강진 푸소
남해 독일마을	공주 한옥마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다만, 개정안은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등에 필요한 지원은 해당 단지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주체와 객체를 수정⁵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11조의5는 조 제목을 “민박단지의 지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11조의16은 이미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농어촌민박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및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두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11조의16에서는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의 요건 및 절차를 따로 위임하지 아니하였는데, 개정안 제11조의15에서 농어촌민박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를 위임한 것을 참고하여 제11조의16에서도 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⁵²⁾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1) 예컨대, 제11조의15(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2) 예컨대, 제11조의16(지정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 및 지정해제 요건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유사입법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치유자원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해제의 근거 법령
2. 해양치유지구 해제의 사유
3. 해양치유지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치유지구 지정전의 상태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환원되고, 제18조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5.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 결정 관련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u>농어촌민박사업</u> (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 ----- ----- ----- ----- <u>농어촌민박사업</u> ----- ----- -----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u>

현행	개정안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등급결정 결과에 따른 지원을 통해 농어촌관광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촌관광 경영체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지원 규정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계열화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계열화사업자의 관리, 육성 및 재정·세제의 지원 또는 배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안 제13조제4항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2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으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수등급 선정 농어촌관광사업장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우수등급 선정 사업장 수 (A, 개소)	43	43	44	45	45	—
1개 사업장 당 지원금액 (B, 백만원/개소)	10	10	10	10	10	—
지원금액 (C=A×B, 백만원)	430	430	440	450	450	2,200

주: 1. 본 추계 결과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동 추가재정소요는 국비 및 지방비의 합산 금액으로 향후 분담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개정안은 등급결정 결과에 따른 지원의 주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약칭하고 있는 시·도지사와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이 이관되어 오는 「농어촌정비법」이 약칭하는 시·도지사는 그 범주가 다르다는 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통합하여 지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⁵³⁾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약칭 비교】

구분	현행 도농교류법	현행 농어촌정비법
기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53) 예컨대,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출입·검사 등에 대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의 실거주 여부, 시설 및 운영 등의 점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과 관련한 절차적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소방안전, 시설기준의 준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 8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 제출·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어촌민박사업장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출입·검사의 근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을 검사할 수 있음.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관리를 위한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운영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장 출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에도, 현재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개인주택인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소방안전 실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119조(통보·보고 및 출입·검사) < 신설>	제25조의2(출입·검사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소방안전, 시설기준의 준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필요한</u>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86조의4에 따라 설치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 설>	<u>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8에 따라 설치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u>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에 따라야 한다.</u>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u>제1항</u>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정안 제25조의2는 자료제출·보고 및 소속공무원의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등록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 여부에 대

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입·검사의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까지 추가할 필요성은 높지 않으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한 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뿐 아니라 시·도지사 까지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제1항에서 사용된 ‘위생·소방안전’을 ‘위생·소방안전 실태’로, ‘실제 거주 여부’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로 ‘사업자’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제2항과 제6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2항과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따라야 함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6항에서 함께 규정⁵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4) 예컨대, 제25조의2(출입·검사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8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입조사·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청문 및 수수료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행정처분 및 지정해제 등의 조치 시 청문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농어촌민박사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3(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1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2. 제11조의16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
<신 설>	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청문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등록서비스에 상응하는 수수료 수납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1) 청문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관한 청문규정을 이관하면서, 개정안 제11조의16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청문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제25조의3(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1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2. 제11조의16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

청문은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개진, 자료제출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위법한 행정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조문의 신설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한편 「행정절차법」 제22조⁵⁵⁾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에 관한 규

55)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영업정지’,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도로 청문규정을 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등록 서비스에 상응하는 수수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신 설>	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과 징수됨.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함.

이에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행정기본법」

-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유사입법례】

「관광진흥법」

-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8. 벌칙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이관하고, 등록제 신설 및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의 신설 등에 따른 벌칙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 27 조 (벌 칙) <신 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11조의7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1조의10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승계 후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12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12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생략)	② (현행 제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호의2와 같음)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설 조문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상의 벌칙을 이관하고 일부 벌칙을 신설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함.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13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u><신 설></u> 8. 제89조제1항에 따른 <u>사업정지명령</u>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u>폐쇄명령</u>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9.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u><삭 제></u> 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11조의7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1조의10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승계 후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12제1항에 따른 <u>사업정지명령</u>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u>등록이 취소</u>되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12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첫째, 개정안 제27조제1항제2호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해당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당초 안 제11조의12제1항제2호⁵⁶⁾에서 규정한 불명확한 등록취소 사유를 벌칙규정에서도 차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11조의12제1항제2호와 관련한 수정의견⁵⁷⁾을 고려하여 안 제27조제1항제2호 역시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등으로 벌칙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27조제1항제4호는 상속으로 인한 승계를 한 자가 승계 후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56)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을 한 경우

57) 예컨대,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벌칙의 수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제11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한편, 개정안 제27조제1항제5호는 ‘제11조의12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11조의1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 명령 또는 제11조의12제5항 사업장 폐쇄 조치를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27조제1항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만을 두고 있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무신고 사업장을 농어촌민박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⁵⁸⁾에 따른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로 보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8)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양벌규정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안 제11조14에 따른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경우 법인·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7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양벌규정은 직접 범죄행위를 한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미함.

법인 등 조직체가 주체가 되는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행위자만 처벌하여서는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농어촌정비법」에도 다음과 같은 유사한 규정이 있음.

【유사입법례】

「농어촌정비법」

제1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개정안 제11조의4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개인, 법인 뿐 아니라 단체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벌규정 역시 법인 뿐 아니라 단체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0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과태료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이관하고,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u>대표자</u> 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대표자</u> 또는 <u>농어촌민박사업자</u>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u> 5.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u> 6. <u>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u> 7. <u>제11조의11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8. <u>제11조의12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u> 9. <u>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이관 및 개정안 제25조의2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출입·검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의 과태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고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현행 「농어촌정비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검토함.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현행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안
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u><신 설></u>	7. 제11조의11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12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u>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첫째, 개정안 제28조제2항제9호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한 경우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25조의2제2항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관한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검사의 실효성 확보 및 유사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28조제2항제6호는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농어촌민박사업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을 이관한 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의 준수사항(요금표게시,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조식비용의 민박요금 포함,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 홈페이지 표시)이외에 식사 제공 시 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는 바, 현행법에서 별도의 과태료를 두는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부 칙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이 법을 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② 종전에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법 규정 이관에 따른 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④ 법령이 개별적으로 정비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의 개정효력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 미칠수 있도록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둠(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삭제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9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

부 칙

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118조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4호 중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을 “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나,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1) 시행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 등의 개정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의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경과조치

① 기존 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안은 종전에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신고제를 등록제나 허가제 등 보다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는 제도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지위를 신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는 간주규정을 두는 경우 ② 간주규정을 두되 유예기간 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경우 ③ 간주규정을 두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④ 유예기간 내에 신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관련 입법례】

유 형	입 법 례
종전의 지위를 신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는 간주규정을 두는 사례 (유형 1)	「동물보호법」 부칙 <법률 제19017호, 2022. 10. 18.> 제18조(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규정을 두되 유예기간 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사례 (유형 2)	「공익신탁법」 부칙 <법률 제20075호, 2024. 1. 23> 제2조(종전의 공익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법」 제10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신탁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으로 본다. 다만, 해당 공익신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에 따른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취소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간주규정을 두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사례 (유형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856호, 2021.1.5.> 제2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허가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에 신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경우 (유형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233호, 2019.1.5.> 제3조(정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정원을 등록한 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다만, 개정안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기존 신고제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미신고 영업자나 불법·편법적 운영 영업자를 걸러내고,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민박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신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유형2)에서 (유형4)까지의 경과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정 기간 내 신법에 따라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신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존 사업자를 기존에 수행해오던 사업에서 퇴출시키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등록에 따른 행정적·금전적 부담 역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 역시 존재함.

이에 기존 사업자의 신뢰보호 이익,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형 4)와 같이 일정 기간 내에 신법에 따른 등록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농어촌민박협회 역시 일정 기간 내 재등록 하도록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② 법 조문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개정안은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형법」 제1조⁵⁹⁾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⁶⁰⁾에 따르면 범죄 또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범죄 또는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또는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고,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농어촌정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사라지게 됨.

59)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동물보호법」 부칙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둘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⁶¹⁾에 따르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제재처분(영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으로 이관하고,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농어촌정비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이미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1)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유사입법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38호, 2006. 10. 4., 제정>

제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셋째, 그 밖에도 일반적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 여부 및 추가적인 경과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자본시장법」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정, 부칙)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등록·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의 개정·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 등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 그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변경 내용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이를 위하여 다른 법률의 개정을 부칙으로 두고 있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⁶²⁾에도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서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조문이 존재함에도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는 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령이 개별적으로 정비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 개정·제정·폐지의 효력이 그 법률 또는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으로, 법이관에 따라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농어촌정

6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89조제4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법」 중 이관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0442호, 2011. 3. 8., 제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417